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20년 11월 이사회 회의록

- 이사회공고 : 2020년 11월 23일(월)
- 일 시 : 2020년 11월 30일(월) 오후 6시 30분
- 장 소 : 무지개회의실
- 참 석 자

박중기	이용자	이애순	윤희채	유경선	허용의	박근미	안윤환	이옥자	김영찬
					X	X	X	X	X
신지현	김인숙	김성화	권영태	고성봉	최철중	홍현표	심상원	이인동	김유환
X	X					X			
김대영								참석자	참석률
								13명	61.9%

기록: 채수진

<회의 순서>

1. 개회선언
2. 이사장 인사말
3. 보고 : 채수진 보고함

4. 심의 안건

[1호 의안] 조합원 사업이용으로 인정할 조합원가구원 승인 건.

- ▶ 제안 설명 : (건강마을위원회)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합원의 가구원은 법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나 동법 제 25조에 의거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조합원의 가구원(주민등록 등본에 의해 증명되어야 함)이 조합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에 대하여 총공급고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2020년 10월에 가입된 조합원의 가구원**들을 총공급고 산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20년 10월에 가입한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가구원)

NO.	가입일	조합원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소
1	10/7	7312	김남희	761030-2	보개면 가율리 방골
2	10/7	7312	윤영성	021125-3	보개면 가율리 방골
3	10/7	7312	윤은성	050415-3	보개면 가율리 방골
4	10/6	7314	박소정	801003-2	공도읍 만정리 송원
5	10/6	7314	박시울	090914-4	공도읍 만정리 송원
6	10/6	7314	박설아	180116-4	공도읍 만정리 송원
7	10/8	7315	이유빈	111230-4	2동 석정동 중앙로

8	10/15	7316	한수진	570325-1	금광면 사흘리 사흘
9	10/15	7317	이병근	980617-1	미양면 후평리 중앙
10	10/15	7317	신은수	081223-1	미양면 후평리 중앙
11	10/23	7319	임병준	840707-1	3동 당왕동 고수2로
12	10/23	7319	임서연	160404-4	3동 당왕동 고수2로
13	10/23	7319	임시연	200316-4	3동 당왕동 고수2로
14	10/26	7321	김현경	480713-1	미양면 보채리 안성
15	10/26	7323	이갑범	600413-1	1동 명륜동 향교길
16	10/26	7324	견민수	-	3동 신소현동 남파
17	10/26	7325	신기봉	660102-1	3동 당왕동 고수2로
18	10/26	7325	신주희	980711-2	3동 당왕동 고수2로
19	10/26	7325	신호열	991117-1	3동 당왕동 고수2로
20	10/30	7326	박기용	750206-1	2동 석정동 석정2길
21	10/30	7326	박소영	070112-4	2동 석정동 석정2길
22	10/30	7326	박세영	120831-4	2동 석정동 석정2길
23	10/13	20806	유윤미	790625-2	공도읍 만정리 공도
24	10/13	20806	박을하	090706-3	공도읍 만정리 공도
25	10/13	20806	박시하	101211-3	공도읍 만정리 공도
26	10/13	20806	박설하	151126-4	공도읍 만정리 공도
27	10/20	20808	김의순	510207-2	공도읍 용두리 공도

[결정사항] 원안대로 승인

[2호 의안] 2020년도 추경예산 승인의 건

- ▶ 제안 설명 : (경영위원회) 2020년도 9월까지 가결산을 토대로 2020년도 추경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대의원 예산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 다음의 추가경정 안을 검토,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추가경정 안.

계정과목	2020년 예산	가결산	차액	비고
복리후생	482,283,663	469,384,185	12,899,478	
여비교통비	1,273,555	200,333	1,073,222	
접대비	2,865,533	2,716,507	149,026	
수도료	10,924,042	10,085,014	839,028	
전력비	66,790,220	57,650,105	9,140,115	
제세공과	49,077,628	42,358,152	6,719,476	
감가상각비	143,203,263	98,306,333	44,896,930	
수선유지	58,890,716	44,911,010	13,979,706	
보험료	39,857,105	39,506,600	350,505	

차량유지	18,028,938	14,843,059	3,185,879	
교육훈련	28,767,000	3,972,190	24,794,810	
도서인쇄	12,337,774	11,838,967	498,807	
선전홍보	42,798,750	41,160,770	1,637,980	
조직활동	49,071,000	20,185,625	28,885,375	
보건예방	160,201,805	136,353,677	23,848,128	
지역복지	34,527,000	33,331,208	1,195,792	
소모임	17,255,000	8,228,000	9,027,000	
예산대비 미달계정 소계				
총계	1,218,152,992	1,035,031,735	(-)183,121,257	
통신비	18,216,707	20,883,485	2,666,778	- 전화요금 초과 사용
지급임차료	112,500,000	122,400,000	9,900,000	- 2020년 본점 신축이 예정되었고 그에 따른 비용 또한 신축 이전비용만 책정되어 1년치의 지급임차료가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 초과 사용됨
운반비	875,690	1,181,218	305,528	- 철약 운반비 증가
회의비	22,928,800	23,792,280	863,480	- 본점 신축 이전과 관련 전반의 자문료 발생으로 초과 사용
소모품비	48,175,381	53,638,184	5,462,803	- 마스크, 소독제 등 위생관련 용품 구매 증가
지급수수	59,502,424	62,719,763	3,217,339	- 외부 철약탕제비용 추가 발생, 의료기기 정도 관리 방사선 수수료 발생
건물관리비	17,197,367	18,316,200	1,118,833	- 2020년 본점 신축이 예정되었고 그에 따른 비용 또한 신축 이전비용만 책정되어 1년치의 관리비가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 초과 사용됨
연대활동	3,611,289	9,524,400	5,913,111	- 연대활동 사업비 중에서 일본 의료사협 코로나 지원물품 구입비를 조합분담과 후원금을 합하여 비용 처리하였음. 서로 연관된 수입과 지출 금액이나, 각각의 수입과 지출을 총액으로 처리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해당 예산에서 초과된 것으로 처리됨. * 지원물품비 4,635,410 (지출처리) * 후 원 금 4,390,000 (수입처리) - 연합회 등 의료연대 비용 증가

예산대비 초과계정 소계				
총계	283,007,658	312,455,530	(+)29,447,872	
총계 합			(-)153,673,385	

[논의사항]

- 코로나 19 때문에 추가된 비용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꼭 필요한 물품이다.
- 초과비용보다는 미달비용이 더 많은 것 같다.

[결정사항] 원안대로 승인

[3호 의안] 2021년도 사업계획 안 보고의 건

- ▶ 제안 설명 : (각 위원회) 각 위원회별로 2021년도 최종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이사회 안건으로 정정되었습니다. 별첨된 사업계획안을 검토,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별도의 2021년도 사업계획 안을 참고.

[논의사항]

- 10월 이사회에서 전부 검토한 내용이다. 추가 수정안이 없으면 원안대로 승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은가? 경영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조정안이 있는데 논의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 4호 의안으로 다룰 예산안 승인의 건에서 같이 설명해 드릴 예정이다.

[결정사항] 원안대로 승인

[4호 의안] 2021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 ▶ 제안 설명 : (경영위원회) 2021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1차 원장단모임, 2차 경영위원회, 3차 개별단위별 조정과정을 통하여 2021년도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에 별도의 자료로 제시되는 2021년도 예산을 검토, 조정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영사자료 : 2021년도 예산안

[논의사항]

- 승인을 해주시면 보고드린 내용으로 수정해서 진행하고, 의견이 있으시면 다시 반영할 것이다.
-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가 나가는 금액도 있지 않은가?
- 전부 반영해서 넣었다.
-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어떻게 되는가?
- 의료기구 같은 경우는 5년 정도인데 건물은 40년이다.
- 원장님들이 자꾸 바뀌는 것이 걱정된다.
- 직원들에게 자꾸 좋은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내년엔 서안성에서 흑자보기를 기대해보겠다.
- 좋은 의견이 있으신가? 원안대로 승인해 주었으면 좋겠다.
- 사랑의 집 고치기 예산은 깎지 않았으면 좋겠다.
- 깎지 않았다.
- 지역특화사업은 어떻게 되었나?
- 지역특화사업은 빼지 말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건강마을위원회에서 예산을 많이 줄였다.
- 현재 예산계획이 최선인 것 같다.
- 원안대로 승인하자.
- 동의한다.

[결정사항] 원안대로 승인

[5호 의안] 2021년도 예산수립을 위한 예산총회 상정 의안 승인의 건

- ▷ 제안 설명 : (건강마을위원회) 대의원 예산총회를 진행하기 위하여 대의원총회의 안건 및 순서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21년도 예산수립을 위한 예산총회 상정 의안

▪ 제 1호 의안.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2021년도 사업계획(안)
- 2021년도 예산(안)

▪ 제 2호 의안. 2020년도 추경예산 승인

○ 기타

[논의사항]

- 필요한 부분이다. 동의한다.

[결정사항] 원안대로 승인

[6호 의안] 2021년도 예산수립을 위한 예산총회 방식 결정의 건

- ▶ 제안 설명 : (건강마을위원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이나 회의 등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현재 12월 19일로 계획되어 있는 대의원총회를 대면으로 준비할 것인지 비대면으로 준비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사항]

- 건강마을위원회에서 지금처럼 코로나가 창궐한 시기에 지역별로 대의원모임에서 설명하고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다.
- 지역별로 대의원모임은 다 했으면 좋겠다.
- 실내에서 50명 이상 모일 수가 없으므로 성원에도 문제가 있다. 대면으로 할 수가 없다.
- 만약 대면으로 한다고 하면 이사님들이 책임지고 성원을 시켜주셔야 한다.
- 비대면으로 하자. 지금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 대의원모임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비대면으로 진행하자.
- 그렇다면 총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승인해 줄 것인가?
- 우리가 정하면 되는가?
- 현재 지역 대의원모임을 대부분 진행했다. 코로나 19 때문에 연기된 곳인 1동, 2동이다.
- 조합사업부 직원들에게 발 빠르게 대의원모임을 진행해서 대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대부분 지역이 모임을 진행했다.
- 그럼 비대면으로 하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 지난 총회 안건에 등기를 변경하는 안건이 있었기 때문에 인감도장도 찍고, 등기소에 인감증명서도 제출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안건이 없어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 그렇다면 21년도 예산총회는 비대면으로 하는 것으로 동의해 줄 것인가?
- 동의한다.


[결정사항] 2021년도 예산수립을 위한 예산총회 방식은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

[7호 의안] 안성요양보호사교육원 확장 이전 승인의 건

- ▶ 제안 설명 : (3동운영위원회) 안성요양보호사교육원의 열악한 시설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영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이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다음의 확장 이전 안을 검토,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안성요양보호사교육원 확장 이전 계획 안.

	안성요양보호사교육원 확장 이전 계획 안
---	------------------------------

■ 안성요양보호사교육원 확장에 관하여

- 2019년 국비기관 인증평가시(내용 : 국비지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에 적합한지를 평가 / 평가기관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교육원 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평가에 따른 지적사항>

지적사항	세부내용	교육원 대처
교육원 외부 환경	지하에서 올라오는 악취	조치 불가
	건물내부 계단의 어두운 조명	1층은 아예 전등이 없고, 2층은 전등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음. 3층은 교육원에서 교체함 (수리요청시 건물주가 거부함)
교육원 내부 환경	남녀구분없이 한칸인 화장실	본점 신축건물 미입주시 남녀 구분공사 하기로 함
	상담실 구분	본점 신축건물 미입주시 내부 수리를 통해 별도 마련하기로 함
	교수 및 교육생 휴게실	

- 화장실이 1칸이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휴식시간마다 화장실을 가기위해 줄을 서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만족도조사시 가장 많이 나오는 불만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남자 교육생들이 늘어 화장실 이용시 불편함을 호소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 현재 상담실은 홀딩도어를 설치하여 필요시에만 홀딩도어를 펴서 상담실 구분을 하고 있어 이에 상담시 비밀보장이 되지 않아 상담실을 별도로 구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 교수 및 교육생 휴게실을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휴게공간이 있으면 교수진 및 교육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 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따른 경과보고>

- 2020년 10월 3동 운영위원회에서 평가시 지적사항 조치문제 등이 있어 교육원 이전에 대한 의견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에 현 교육원의 임대조건(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과 비슷하다면 현 건물을 수리를 하는 것보다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교육원 이전을 위한 점포를 시장조사하던 중, 신협 본점 건물(이하 신협)이 공실이어서 현 조건과 비슷하게 교육원 이전이 가능했습니다.

- 원래 신협 4층으로의 이전을 염두해두었으나, 약32평으로 교육원이 이전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현 교육원 37평)

화장실이 남녀 구분되어 2곳으로 이루어져 있고 현 교육원보다는 내.외부 환경이 좋아 신협 3층(분양평수 80평)으로의 이전을 2020년 11월 3동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하였습니다.

■ 예상비용

“신협”으로 확대 이전시 예상비용
 보증금 1000만원 / 현 보증금 1000만원
 월 세 66만원 / 현재 월세 55만원
 관리비 40만원 (기존 세입자가 납부했던 평균 금액)/ 현재 관리비항목 비용 20만원 지출
 평 형 80평형 / 현 37평

■ 기대효과

-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의거하여 교육원의 통합강의실은 1인당 2.2㎡ 가 되어야 합니다. 현 교육원의 통합강의실은 66.9㎡로 정원이 30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의 코로나 확산 방지조치로 인해 2020년 7월부터는 한자리 띄어안기를 진행함에 따라 정원 30명 중 24명까지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현재 수강인원에 따른 수강료 조건표>

24명 수강시*65만원	1,560만원	390만원 손실
30명 수강시*65만원	1,950만원	

- 신협으로 이전시 정원을 40명으로 증원하여 한자리 띄어안기를 해도 최대 수강인원이 30명이 되면 코로나로 인한 인원 및 수강료 손실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현 교육원은 50번, 70번 버스로 이동이 여의치 않아 교육생들의 출퇴근시 이동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안성의 지리를 잘 모르는 분들이나 대림동산이나 공도 거주자는 이동이 편리한 성심간호학원 부설 교육원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교육원이 신협으로 이전한다면, 정원이 증원되고 접근성이 개선되어 교육생 모집과 수입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약점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비용의 증가 (월세 및 관리비) - 기자재 구입비 증가 (인원 증대에 따른 추가 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 증가 - 교육생 만족도 상승 - 내부 시설 편의성 증가 - 국비인증평가시 유리
위험요인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적 압박 및 불안정 - 타 의료기관의 자산투자 기회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생 및 매출증대 가능성 확보 - 교육생 및 매출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 동기 유발

■ 교육원 중장기 발전 계획

구 분	전략대안
단기(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원 이전과 교육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 정원 40명 모집을 위한 운영체계 마련 - 교육생을 대상으로 조합원 가입 홍보, 유도 - 국비인증 우수기관 인증을 위한 계획 수립 - 노인주간보호센터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양질의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
중기(3~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 40명으로의 안정적인 운영 - 국비인증 우수기관 인증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 안정화 (우수기관 인증시 수강료 중 교육생들의 자기부담금 감소) - 국비인증 우수기관 인증에 따른 홍보 진행 - 조합원 가입 각 기수별 10% 달성 - 노인주간보호센터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양질의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
장기(6~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인증 우수기관 유지 - 국비인증 우수기관 인증에 따른 홍보 진행 - 조합원 가입 각 기수별 20% 달성 - 노인주간보호센터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양질의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

■ 교육생들의 만족도조사 결과표

기수	조사항목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50기	교육과정	71	27	1.5
	교육시설 및 장비	47	46	1
	훈련강사	71	29	
51기	교육과정	66	31	1
	교육시설 및 장비	56	36	2
	훈련강사	69	3	1
52기	교육과정	51	49	
	교육시설 및 장비	37	63	
	훈련강사	47	53	
53기	교육과정	53	43	1
	교육시설 및 장비	46	41	11
	훈련강사	51	46	3
54기	교육과정	80	20	
	교육시설 및 장비	70	27	3
	훈련강사	88	1	1
55기	교육과정	78	22	
	교육시설 및 장비	70	25	1
	훈련강사	77	23	
56기	교육과정	63	26	1
	교육시설 및 장비	56	26	2
	훈련강사	69	26	1
57기	교육과정	61	34	2
	교육시설 및 장비	49	34	15
	훈련강사	63	36	1

- 교육과정, 교육시설 및 장비, 훈련강사 총 3개의 만족도조사 항목 중 모든 기수에서 교육시설 및 장비에 관한 만족도가 가장 낮습니다.

■ 확장시 매출 증대(안)

- 현재 정원 30명에서 10명 증가
- 수치상 10명의 수강생이 증가하면 매출은 650만원이 증가함
- 현재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인한 한자리 띄어안기를 하더라도 수강생 6명이 증가하면 해당 기수당 390만원의 매출이 증가할 수 있음
- 이는 1년 중 5번의 교육과정에서 6명이 증가하면 연 1,950만원 정도의 매출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논의사항]

- 추가로 설명해 드리자면 25명의 수강생이 있으면 적자가 나지 않는 구조이다. 교육원을 옮기면 추가로 교육생을 받을 수도 있고 현재 교육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 대기자가 있을 정도이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옮길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추가 비용이 들어도 승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교육생이 25명이든 30명이든 강사비는 똑같다.
- 옮겨가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

- 환경이 더 좋아지는 것이다.

[결정사항] 원안대로 승인

[8호 의안] 농민한의원 진료시간 변경 재논의 안.

- ▶ 제안 설명 : 10월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추가적인 자료를 포함한 재검토의 결정이 이뤄진바, 경영위원회에서 그에 따른 자료를 재검토, 재논의 후 이사회에 다시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검토 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안성농민한의원	9:00~7:00	9:00~6:30
※ 동절기, 하절기 구분 없이 진료시간 변경		

<제안배경>

<p>-2018년 12월 이후로 농민의원 진료시간 18:30으로 조정. -18:00 이후 접수 환자의 감소 (일평균 2018년 1.3명, 2019년 1.0명, 2020년 0.7명) -접수마감 시간은 현행 18:00로 유지하면서 진료마감 시간을 앞당겨 압축적으로 진료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예상됨.</p>

<안성농민한의원 최근 3개년 시간대별 일 평균 환자수>

	5:30~5:45	5:45~6:00	6:00~
2018년평균	1.2	1.2	1.2
2019년평균	1.2	1.1	0.9
2020년평균	1.1	1.2	0.7

<농민한의원 손익>

과목	농민한의원	비고
I.매출액 (평균, 1시간 매출)	369,600	일일 평균 0.7인 * 22일
[직원급여]월급여	1,111,154	의사1인+업무보조2인+접수1인 *22일
퇴직급여	92,596	급여/12
[복리후생]국민연금	50,001	보험요율
[복리후생]건강보험	40,840	보험요율
[복리후생]고용보험	11,650	근무시간비율
[통신비]전화요금		근무시간비율 미비한 지출
[통신비]컴퓨터통		근무시간과 상관없는 지출
[수도료]웅진렌탈		
[전력비]전기요금		근무시간비율

[제세공과]세금		
감가상각비		근무시간과 상관없는 지출
지급임차료		
[수선비]		수선비 발생확률이 낮음
[보험료]화재보험		근무시간과 상관없는 지출
[보험료]산재보험		근무시간비율
소모품비		근무시간비율
[지급수수]카드수수		
[지급수수]보안장치		근무시간과 상관없는 지출
[지급수수]폐기물		
[지급수수]기장료		
[지급수수]기타수수		미비한 지출
V. 영업손익	-936,641	

< 타 한의원 근무 시간표 >

한의원명	평일기준 진료시간
용한의원 (장기로 35)	(09:00~19:30) (점심 13:00~14:00)
안성한의원 (중앙로372번길 26)	(09:00~19:30) (점심 13:00~14:00)
경희우리 (중앙로382번길 15)	(09:00~19:00) (점심 13:00~14:00)
비봉한의원 (중앙로382번길 18)	(09:00~17:00) (점심 12:30~13:30)
나무그늘 (중앙로 370)	(09:00~20:00) (점심 13:00~14:00)
행복한의원 (중앙로371번길 7)	(09:00~20:00) (점심 13:00~14:00)
중앙한의원 (중앙로 389)	(09:00~18:30) (점심 12:30~14:00)
신세계한의원 (중앙로 391)	(09:30~18:00) (점심시간 없이 진료)
중국한의원 (안성맞춤대로 1062)	(월, 목 09:00~18:30) (화, 수, 금 09:00~16:30) (점심 13:00~14:00)

< 2020년 10월 오후 17:30~19:00 내원환자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내원환자 53명 - 환자의 연령층 17~64세
--

- 초진 17명, 재진 36명
- 내원환자 수는 0~6명으로 격차가 있으며, 평균 2.8명이 내원.
- 내원환자의 88%가 침 환자임.
- 내원환자는 세분화 하면 급성, 단일 질환의 환자이며 만성, 중증인 환자는 없었음.
- 18시 이후 접수 환자는 12명이며, 침 환자의 마지막 접수시간은 18:10, 약환자의 마지막 접수시간은 18:30 으로 나머지 41명의 환자가 18시 이전에 접수 됨.
-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중증환자는 없으므로 6:30분까지 진료를 하더라도 18시10분 이전에 내원하므로 진료시간이 확보되어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충분히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환자가 몰릴 경우 혼잡과, 질 저하의 우려도 예상됨.

<경영위원회 논의사항>

- 6시 이후에도 환자가 많이 오는 것 같다.
- 6시~6시 10분 사이에 온 환자가 12명이다. 2020년 10월 한 달 통계이다.
- 한의원들의 근무시간이 많이 다른 것 같다.
- 한의원들은 진료시간이 유동적인데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한의원들은 진료시간이 긴 편이고, 원장님들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비교적 진료시간이 짧다.
- 한의원 원장님들은 사전에 진료시간이 단축된다는 공지를 한다면 환자가 얼마나 줄 것인가 예상이 되는가?
- 6시 30분까지 진료를 할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줄지 않을 수는 있다. 대부분 6시 10분 이전에 오신다.
- 환자들이 퇴근 시간 이후에 오는 것 아닌가?
- 현재 6시까지 진료 마감인가?
- 6시이긴 하지만 6시 이후에 오셔도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를 보시면 6시 이후에 6명이 오는 날도 있고, 한 명도 오지 않는 날도 있다. 진료를 보다가 6시 30분이 되면 진료를 마감해야 하니 피해를 보는 환자가 생기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30분을 줄인다고 해서 크게 손해를 보거나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든다. 피해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했을 때, 큰 피해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 6시 30분이라고 해서 하고 있던 진료를 마감하고 환자를 중간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10분 20분 늦어진다고 해도 환자를 끝까지 진료하고 6시 이후에 오는 환자분들에게 진료 마감 시간이 6시 30분이기 때문에 찜질 등 원하는 진료를 다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사전에 설명해 드리고 진료에 들어가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 마감 시간에 직원 수를 줄이는 것은 어떤가?
- 정리할 부분이 많아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 현재 늦게 오는 환자 중에서 늦게 끝나면 중간에 진료를 자르지 않는다. 끝까지 진료한다. 늦으면 원장님이 조금 더 봐주면 된다.
- 피해를 보는 환자들 없을 수는 없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30분 정도 단축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 6시 이후에 오는 환자들은 응급으로 오는 환자들 아니므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 늦게 오는 환자가 있으면 최대한 진료를 한다고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으면 좋겠다.

[결정사항]

- 6시 이후에 오는 환자들에게 진료 마감 시간과 진료시간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한다는 내용을 넣어 원안에 동의 후 다시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함

[논의사항]

- 그럼 진료 마감을 6시까지 한다는 것인가?
- 그렇지 않다. 6시 이후에 오시는 환자가 있어도 접수를 받을 것이다. 환자에게 치료가 짧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드린다고 하였다.
- 직원들의 일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동의한다.
- 하절기에는 해가 너무 길다. 6시 30분까지 하는 것은 진료시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닌가? 하절기, 동절기 시간을 분리하는 것은 어떠한가?
- 한의원에서는 하절기, 동절기 시간을 분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한 것이다.
- 다른 한의원들의 시간이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다. 너무 다양하다.
- 하절기라고 해서 늦게 환자가 오는 것이 아니다. 저녁 9시에도 환하다. 내가 몸이 불편하면 낮에 온다. 일하다가 진료를 받으러 간다.
- 7시까지 하면 직장인들이 6시에 끝나고 오면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6시 30분까지 하면 그렇지 못할 것이다.
- 경영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 30분에 대한 에너지를 비축해서 전에 오는 다른 환자들에게 더 세심하게 보았으면 좋겠다.
- 농민의원은 현재 동절기, 하절기 구분 없이 6시 30분까지 진료를 하고 있다.
- 현재 타 한의원 진료시간을 보면 늦게까지 하는 한의원은 2개 정도이다. 일단 6시 30분까지 단축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한 번 지켜보자. 진료의 질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 대부분 이사님이 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 같다. 농민한의원 진료시간을 7시에 6시 30분까지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자.
- 동의한다.

[결정사항] 안성농민한의원 진료시간을 7시에서 6시 30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승인

[9호 의안] 2021년도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예산안 승인의 건

- ▶ 제안 설명 :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의 2021년도 예산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별도의 자료를 검토 후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예산안을 참고.

[결정사항] 원안대로 승인

[기타사항]

- 건강마을위원회에서 내년에 대의원선거가 있는데 타 의료협동조합보다 대의원 수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나왔다. 활동하는 대의원 수보다 이름만 올려놓는 대의원이 더 많은 것 같다. 대의원 수를 줄이자는 의견이 나왔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줄이면 어떨겠는가?
- 이번 보건복지부 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다.
- 조합원 차입에 대한 서류는 무엇인가?
- 경영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참고로 보시면 된다. 타 의료협동조합에서는 은행에서 대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합원 차입을 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다.
- 법으로 보면 대의원 수를 100명으로 하게끔 되어있다. 하지만 우리 정관에는 100명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우리만 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조합도 100명이 넘는다. 조합원 수에 비례해서 대의원 수를 100명으로 제한을 두면 관리를 하기가 어렵다, 법이 잘못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연합회 차원에서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대의원 수를 정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정하는 것이다.
- 그런데 현재 활동하는 대의원 수가 너무 적다.
- 대의원 선거 때,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억지로 대의원을 시키려고 고생을 많이 한다.
- 지금까지는 대의원 선거구 수에 맞춰서 대의원 수를 늘리고 줄이고 했었다. 대의원 수에 대한 문제는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결정해야 한다.
- 대의원 수를 정하는 것은 총회 의결사항인가?
- 이사회에서 정하는 것이다.
- 어떤 방법으로 줄이느냐가 문제인 것 같다. 잘하는 사람 위주로 하면 지역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
- 효과적으로 줄일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 우리는 대의원에게 주는 혜택이 너무 적은 것 같다.
- 소모임, 건강모임이 잘 되는 지역은 그 기반으로 대의원을 뽑았으면 좋겠다.
- 다음 이사회까지 많은 의견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
- 아직 대의원 선거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 천천히 살펴보자.
- 이사회 회의록 중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 장기근속자 시상 여부의 건이 있는데 복지부 지정일 맞춰 직원들의 입사일, 시상 연도 수정이 필요하다. 검토해달라.
- 2020년 우수지역, 우수조합원 시상은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시상할 근거가 부족해서 시상하지 않을 예정이다.